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박 연 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공학박사

I.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1. 복식부기의 개념

정부부문의 회계제도 개혁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장부기록 방식의 전환보다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회계적 인식의 도입이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발생주의라는 회계적 인식 문제보다는 복식부기로 표현되는 장부기록방식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왔기에 정부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강조점이 놓여져 왔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에 회계제도 개혁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복식부기라고 하면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장부정리방식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회계적 거래 발생시 거래내역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

로 나누어 기록하고 그 결과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산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시스템이다.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있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을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적 거래의 발생시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추가하여 기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거래를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중¹⁾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의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현금수지의 변동에 거래의 주안점이 있어 현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현금이 나가면 세출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에는 편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통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반면에 이 방식은 현금의 수지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이 표시되지 못하고, 둘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출이 곤란하며, 셋째,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의 부재로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또한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목별조서)의 개별적 세부자료만 나열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산서를 산출하여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적발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1) 장부예의 기록은 자동분개처리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II.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1. 도입배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국내적으로 1995년 민선 이후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재정운영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만 보고하던 결산 내역을 시민 단체와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 결산서를 일반 주민이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외부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기업형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IMF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부문의 제도개혁을 요구하였다.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개혁 요구이다. 특히 IMF의 2002년 GFS 매뉴얼에는 완전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와 정부재정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1998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국가는 재정경제부가, 지방은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키로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1999년 2월 수립하였다. 당시 계획에서는 제도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2002년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시험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시험운영 제도에 대한 공감대 확보 등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유보해 왔다.

당초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3년도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혁신 로드맵에 포함시키고 2004년에는 국정과제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최초 규정은 2004년 1월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²⁾에서이다. 이후

2)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시에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한 도입 근거규정³⁾을 두고 그 시행 시기를 2007년 1월 1일로 하였다.

2.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아직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히 보여질 수는 없다. 단지 회계학 교과서나 외국의 도입사례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유추해보는 정도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재정운영시스템 차원의 접근과 고객인 주민 관점,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기대 효과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 운영시스템의 개혁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내역을 전 회계(일반, 특별, 공기업)를 종합하여 투명하게 공개(회계정보의 투명성)한다.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재정제도 개혁의 첫 번째 목표이다.

둘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산출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의 산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기반이 구축된다.

셋째,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지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지출은 지출의 효과

-
- 3)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결산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적 지출과 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소멸되는 수익적(경상적) 지출로 나뉜다. 또한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통하여 매년 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지출행위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⁴⁾가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될 것이다.

2) 지역 주민에 대한 효과

지역주민에게는 우선 지방재정운영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된다. 특히 이해하기 쉽게 전체를 요약한 보고서와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된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주민들이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까지 마련된다면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게 된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참여 증대와 외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의 핵심은 1년간 수입과 비용이라는 재정운영의 결과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자신의 살림살이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의 운용을 통해 어떻게 부(富)가 변동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던 가계부 수준의 기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록이 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경제 IQ를 높이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다.

3) 국제적 위상 제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결과로 산출되는 자료는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된 국가 재정통계(GFS)정보의 산출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2006년도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GCI)에서 우리나라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

4) 여기서의 성과는 민간 부문과 같이 수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 특정 지출로 인해 주민들이 얻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만족감 등) 이익의 총합으로 보여진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63개국 중 42위에 머물렀다.

국제경쟁력과 투명성 지수의 향상은 기본적인 회계인프라의 변혁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I. 그동안 추진상황

회계혁명으로 표현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노력과 관계공무원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있어왔다.

이하에서는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고 추진현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실적

1) 제도적 도입기반 조성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통해 법적인 차원의 규정을 하였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방회계기준을 들 수 있다.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 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경제적 사건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 기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정부회계학회,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 수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부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작성하였는 바, 2006월 10월 17일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⁵⁾” 이 제정 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⁶⁾” 을 제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복식부기 업무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행정자치부령 제348호

6) 행정자치부훈령 제210호, 2006. 11. 7

2)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와 신속한 회계정보 산출을 위해 자동분개 처리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다. 이 시스템은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LADI를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하였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보완, 2005년까지 표준화를 거쳐 전 지자체 보급용 시스템인 DAIS를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을 2005년 12월 전 지자체에 보급하여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분 재무회계 결산시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2008년 이후에는 사업예산제도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전체를 포괄하고 국가-지방간 연계가 이뤄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현행 DAIS를 대체할 계획이다.

3) 시험운영 및 확산보급

연구개발된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을 실제 시험운영을 통해 적용하고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산보급을 추진하여 새로운 회계제도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켰다. 1999년 2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시험운영 기관이 2003년에는 9개, 2004년에는 63개로 증가되었으며 2005년말 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운영을 추진하였다.

시험운영 기간에는 회계처리 Simulation 및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세부내역 실사 및 평가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2006년 말까지 약 60여개 지자체에서 시험용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4)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

복식부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2004년에 표준교재를 출간하고 전 지방자치단체 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복식부기 업무담당자, 일반 공무원 등 교육대상별로 커리큘럼을 달리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복식부기 교육을 받은 총인원은 약 19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5)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제도형성과 집행(거버넌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직·기관 간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거버넌스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는 데 2003년 8월에 구성되어 지방회계기준 제정 관련 전문적 연구와 자문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는 2003년 5월에 설립인가된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는 정부회계분야의 전문적 연구와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구결과와 자문을 복식부기 제도를 정비하는데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운영 업무담당자가 심의위원회와 학회 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 실무적 의견과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은 새로운 제도의 연구개발 → 시험운영 및 표준화 → 확산보급 등 단계적 도입전략 추진과 대대적인 교육훈련의 실시를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시험용이긴 하지만 재무보고서가 산출되고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제도의 실행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별 전담인력 구성과 시험운영 경험 축적 등으로 2007년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로 제도 운영상 생기는 문제에 대한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IV. 향후 정책과제

1. 2007년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

1) 업무과제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회계업무에 복식부기 방식을 적

용하는 것이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의와 수납시, 세출의 경우 검수(검사)와 지급행위시 거래를 인식하고 분개를 하게 된다.

세입이나 세출활동,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적 행위를 하는 업무담당자의 회계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복식부기팀 중심의 회계처리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는 자산·부채 실사 자료의 평가 및 관리로서 금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내용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7년도 중 자산·부채 실사결과 및 회계처리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한 결산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2)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략계획 시행

그동안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⁷⁾ 6가지 주요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키로 하였다.

첫째, 간부공무원, 의원 등 그동안 교육이 소홀했던 대상자에 대한 전략적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단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확산보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 유도를 위해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 정부회계학회 회원, 지역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 등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지닌 지역별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별 업무처리 중 회계처리 및 전산시스템 관련 긴급한 상황 발생시 행자부의 비상처리지원단의 즉시 지원체제가 가동될 것이다. 비상처리 상황에 대한 대장 관리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개정에 반영될 것이다.

넷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대부분의 단위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및 실시간 정보가 산출된다. 단,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자산과 공유재산물품관리제도간 일원화된 제도

7) 2006. 12. 21,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복식부기 시행점검 T/F회의를 개최, 주요 전략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교수) 차원의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검증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무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추진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복식부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도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되는 관련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복식부기 시행상 발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3) 장기적 발전과제

궁극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정정보의 산출과 분석을 통해 지방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적 사항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의 파악과 관리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는 품목별 제도로서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품목 통제중심의 비효율성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2008년도 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고 그 결과를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면 사업단위별 원가의 산출이 가능해진다.

현행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은 현금지출액 모두를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 사업비 전체(자본적 지출 포함)를 세출로 표시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수익적 지출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표시된다. 그 결과 일정기간(1년단위)의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가정보가 원활히 산출되게 되면 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목표와 전략을 성취하기 위해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i) 행정서비스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공시체계

구비, ii) 서비스 단위당 원가의 산출과 지자체간 비교, 평가, iii) 중장기계획, 특정서비스에 대한 공급가액 결정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 iv) 책임부문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가 가능한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단순히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지향가치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재정통제 제도에 추가하여 기업형의 합리적 회계기록 방식을 채택하고 다양한 재정정보 산출과 적절한 정책집행을 위한 분석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활동에 대한 성과의 측정치를 정확히 산출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예산회계시스템과 병행처리되는 체제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의 세입세출결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기제로서 도입되는 것이다.

아직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구축은 일견 불안정하고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점차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뤄지고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 등 장기적 개혁과제의 단초를 제시하고 보다 완벽한 재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결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